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년월일 : 2002. 9. 2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본청과 사업소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 문화회관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 조항 신설

- ▷ 제20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5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회관시설의 사용 허가와 사용료징수 등에 따른 제반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 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

3. 관계법령

- 관계 법령 : 지방사치법 제95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5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회관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징수 등에 따른 제반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20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5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회관시설의 사용허가 와 사용료징수 등에 따른 제반 사무 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 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p>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p>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p>